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604
----------	-----

제출년월일 : 2000. 10.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 이유

접적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건립된 파주시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훈련뿐 아니라 각종 공연·집회 및 혼례식·회갑연등 일반주민의 의례행사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제3조)
- 나. 교육장은 파주시에서 관리·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제4조)
- 다.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전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은 허가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제5조, 제8조)
- 라.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공연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총수입금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시에 납입하도록 함. (안제10조)
- 마. 교육장의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함. (안제14조)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방위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교육장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419의 2번지에 둔다.

제3조(사용목적) 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
3. 각종공연·집회 및 일반행사
4. 혼례식, 회갑연등 의례행사

제4조(운영·관리) ①교육장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③교육장의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①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외에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허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 한다.

③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민방위교육·훈련 또는 민방위관련행사의 일정과 중복될 경우
2.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중인 경우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에 위배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시장은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 ①시장은 교육장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세부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도중 사용중지를 신청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람료등) ①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 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점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된 관람권은 교육장사용이 끝난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확인한다.

④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한 때에는 총수입금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용료만 납입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교육장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 기간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교육장의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총무과 ☎ 940 - 4151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이 순 용
	민방위담당	이 관 식
	담 당 자	한 기 덕

[별표]

1. 기본시설 사용요금

○ 교육관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 용 시 간	금 액	비 고
대강당	2시간	50,000	○ 연습을 위한 시설만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시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3시간	60,000	
	4시간	70,000	
	5시간	80,000	
	6시간	90,000	
	1일 (09:00~18:00)	100,000	
폐백실	1회 (2시간)	10,000	
연회장	1회	15,000	

2. 부대시설 사용요금

○ 부대시설

(단위:원)

시 설 물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10,000	
음향기기사용		1회	20,000	
조 명	일 반	1회	10,000	
	종 합	1회	15,000	
영 사	빔프로젝트	1회	20,000	

○ 냉 · 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대 강 당	1 회	50,000	
페 백 실	1 회	10,000	